

책임자	금융정책실	작성자	백영화 연구위원(3775-9048)	
	김해식 실장(3775-9041)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총 4매

## 보험연구원,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개최

###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 기준 마련 검토 필요

□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4월 4일(수) 오전 10시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 (행사취지) 이번 심포지엄은,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함
- (주제발표)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과 경계가 모호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는 보험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로서 허용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개회사)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계약에는 보험과 경계가 모호한 경우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정립한다면 규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며, 규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주제 :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

###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 논란

□ 보증연장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 통상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해서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서비스를 말하며(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나 담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

○ 상법, 보험업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의 주요 요소 또는 본질적 특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과 단순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 개념적으로는 보험의 주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품의 제조사·판매사의 품질 보증의 연장일 뿐 새로운 위험의 인수가 아니라는 점, 보증연장 서비스가 담보하는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는 보험사고로서의 우연성이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우연한 사고', '위험 보장 목적', '보험료의 수수를 통한 공동재산의 구축', '확률계산방법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 유지', '보험급부의 지급'

○ 실무상으로는 협의의 보증연장서비스(서비스 제공자가 제품의 제조사·판매사로 한정되며, 담보 내용이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 등으로 한정됨) 정도만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임

###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법이나 감독당국 지침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국과 일본에서는 감독당국의 지침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전미보험감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의 모델법을 통해서 보증연장 서비스가 어떠한 경우에 보험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음(<표 1> 참조)

<표 1>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해외 보험 규제 현황 요약

구분		영국	일본	미국
규율 근거		• FCA 지침 (The Perimeter Guidance manual, Chapter 6,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	• 금융청(金融庁) 감독지침 (少額短期保険業者向けの監督指針)	• NAIC 모델법 (Service Contracts Model Act)
서비스 제공자	제조사 판매사	• 원칙적으로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보증서비스보다 내용·범위·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 → 보험에 해당할 수 있음	•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규제 적용 받을 수 있음 - 다만, 제3자의 경우보다 약한 수준의 규제
	제3자	• 보험에 해당	•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 보험에 해당 • 수탁자로서 수리·교환 업무를 수행할 뿐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는 제조사·판매사인 경우 →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음 - 등록 의무, 재무 규제, 주 보험감독당국의 검사·제재 등
담보 범위 (파손 담보 여부)		• 파손 담보 가능 여부는 불명확 - 다만,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보증서비스보다 내용·범위가 현저히 확장된 경우 보험에 해당할 수 있음	•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 담보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 있음	• 주별 입법례에 따라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담보 가능

- 우리나라에서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 번째 방안으로는, **협의를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규 등에 명시하는 방안이 있음
  - 현재 실무를 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으로 규율되지 않고 그 이외의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으로 규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두 번째 방안으로는,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인정**해주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하는 방안이 있음
  -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의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음
  - 이 경우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음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보험업과 매우 유사하므로 이를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해 줄 유인은 크지 않아 보임

- 한편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보증연장 서비스로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 (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을 담보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겠음

○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증대되는 경우 이므로 **일정한 수준의 보험 규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 규제**(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가 필요할 것이며, 그 밖에 어떠한 수준과 내용의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는 서비스 내용과 거래 구조, 서비스 가액 및 시장 규모,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